

## 200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

의안번호
2001-46

제안년월일 : 2001. 11.

제안자 : 거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#### ○ 처분코자 하는 재산

국가기관이 공용 및 공공용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토지를매각.

⇒ 구 시목초등학교 울타리 내에 위치하며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으로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거창출장소의 공용부지 확장 및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수협외 요청에 따라 매각코자 함.

### 2. 처분재산의 표시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구분	재산종별	재산소재지	지목	수량	예정금액 (공시지가)	비고
매각	토지	마리면 대동리 702-8	대	973	6,235천원	
		마리면 대동리 산28-12	임야	209		

※ 위 예정금액은 공시지가에 금액으로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.

### 3. 근거 및 참고자료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: 공유재산 관리계획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36조 : 공유재산관리계획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: 공유재산관리계획서